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47

발의연월일: 2020. 11. 23.

발 의 자: 김정호·신영대·유후덕

정춘숙 • 어기구 • 허종식

김병욱 · 김윤덕 · 신정훈

서동용 · 김경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실적이 전체 지정에서 40% 수준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수도권 지정 기업에 비해 20% 가량 적은 등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의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
	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
획의 수립) ① (생 략)	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u>사항</u>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